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개정 요청사항 (송파구 소관)

□ (석대법 시행령 별표 2) 각 지자체가 주유소 등록요건에 추가하는 입지기준 및 도로와의 관계기준은, 도시계획 또는 건축 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만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

□ 송파구 고시내용 검토 결과

송파구 고시 내용 (주유소 입지·도로와 관계기준)		근거법령 등 검토 결과		
대상 시설	거리 기준	거리 기준	근거법령 등	정비필요 사항
공동주택	25미터 이상	25미터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규정	-
건축법에 의해 건축된 20세 대 이상 공동주택(동일 건축 물이 아닌 경우 대지를 연결 한 2개 이상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함)	25미터 이상	-	근거법령 없음	삭제
의료시설(약국 제외)	25미터 이상	25미터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규정	-
경로당	25미터 이상	25미터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규정	-
노인정	25미터 이상	25미터 이상	‘경로당’과 동의어로 사료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는 ‘경로당’만 규정)	‘노인정’을 ‘경로당’으 로 수정
어린이놀이터	50미터 이상	25미터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는 25미터로 규정	25미터 이상으로 개정 필요
유치원	5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규정	-
보육시설	5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어린이집’과 동의어로 사료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는 ‘어린이집’만 규정)	‘보육시설’을 ‘어린이집 으로 수정

송파구 고시 내용 (주유소 입지·도로와 관계기준)		근거법령 등 검토 결과		
대상 시설	거리 기준	거리 기준	근거법령 등	정비필요 사항
학교출입문	50미터 이상	-	근거법령 없음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 호에서는 고압가스, 천연가스, LPG 저장소만 규정	삭제
폭 20미터 이상 도로와 인접할 것	-	-	근거법령 없음	삭제

* “근거법령 없음”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관련 조례 등 확인 필요

<참 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생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생략)

□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 ② 생략
- ③ 생략
- ④ 생략
- ⑤ 생략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 20. (생략)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2.8.13>

② 생략

③ 생략